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0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이인선・김성원・권영세

추경호 • 박수민 • 안상훈

조승환 · 김희정 · 김석기

박정하 의원 (10인)

제안이유

2019년 'N번방 사태'와 최근 '딥페이크 성범죄 사태'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 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 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음.

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20대 이하가 50%, 10대 이하가 25%고, 이번 '딥페이크'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10대나 20대인 것으로 밝혀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에도 현행 규정은 촬영물 등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 적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명 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		
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			
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			
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		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			
하여야 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8.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		
	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